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정부 제출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함(안 제44조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